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
----------	-----

제출년월일 : 1997. 2.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기부금품모집규제법('95. 12. 30) 및 동법시행령 ('96. 7. 1)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기금의 조성규정을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불합리한 강제조성규정 등을 삭제 개정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14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중 “운영”을 각각 “운용”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 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u>운용</u>조례 제1조(목적) ----- ----- ----- ----- · <u>운용</u> ----- -----</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시민 자율적 성금 및 헌수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 출연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시의 출연금2. 이자수익금3. 기타 수입금
<p>제4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기금관리위원회) ----- <u>운용</u> · ----- ----- -----</p>

참 고 사 항

(관련 법 규)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내무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와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기탁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